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41
----------	-------

발의연월일 : 2025. 5. 19.

발의자 : 이인선 · 성일종 · 서범수  
이성권 · 김정재 · 고동진  
배준영 · 김성원 · 조지연  
강민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부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MZ세대의 경험소비 증가와 ESG라는 사회적 가치에 맞물려 중고시장이 전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중고품 전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두고 있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중고품 중 중고자동차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고시장 확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으로 확대하고 해당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고시장 확장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08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중고품 및 중고자동차”로,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품 및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고자동차”를 “중고품 및 중고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각각 “재활용폐자원, 중고품 및 중고자동차”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고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p><u>동차</u>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u>재활용폐자원</u> 및 <u>중고자동차</u>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p>	<p><u>중고자동차</u>----- -----<u>재활용폐자원</u>, <u>중고품</u> <u>및 중고자동차</u>----- ----- -----.</p>
--	--